

제5장 모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30조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 (2) 지역사회기관단체에 소속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에 힘쓴다.
-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 (5) 차량에 기관 광고 부착
- (6) 지역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정과의 연계 및 홍보
- (7) 웹 사이트에 '은혜재가복지센터'라는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홍보한다.
- (8)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합법적인 홍보 등

제3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이용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 0% 등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받아 부과 한다.

라.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 가)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나)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제3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마. 대상자의 급여 진행 중 중도 해지시 - 해당 월 제공 서비스 날짜에 따라 이용료를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의 이용료에 대하여 계산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의 통장 혹은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3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종류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한다.

(2)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수급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사업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청결 도움(양치질 등), 양치지켜보기, 가글액·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기 도움(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걸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 감기 도움(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 씻기 도움(욕실 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 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 이동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 체위 변경(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관절 오그라들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 도움)

(2) 인지 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 인지자극 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일상 생활 함께 하기(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 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 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 (4)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중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5)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 개인 활동 지원(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6)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7)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28조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 도움, 제사·차례 음식 준비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 지원
 -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 준비 등)
 -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신체 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다. 방문 목록 세부 내용

(1) 차량이용

- 차량 내 목록: 차량에 비치된 옥조 및 시설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자 가정 내 목록: 수급자 가정 내에서 이동 옥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차량 미 이용: 수급자 가정 내에서 이동 옥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급여 비용은 별표 1에 준한다.

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부담 비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일반: 재가 급여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 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9%
 -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나. 가 의 내용과 같은 경우, 기관은 수급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조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가 112,119신고 후,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보고.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물 이용시

- (1) 기관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 (2) 이용자는 기관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은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3) 기관은 이용자 및 기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기관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 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대상자 가정에서 업무 제공시

기관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업무 제공시에 기물파손 및 물품관리에 정직해야한다.

- (1)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변상한다.
- (3) 기관에서는 매월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